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1년 6월 일
발 의 자 : 이성재의원외6인

1. 개정이유

○ 우리군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함으로 본회의에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현재 군정질문 시 보충질문을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건 심의에 있어 본회의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5조 제2항)

나. 발언회수의 제한에 있어서 본회의 질문 시 1문 1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제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32조)

다. 발언시간의 제한에 있어서 보충질문의 시간에는 답변시간 불포함 규정 신설(안 제33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다. 기 타

1) 개정규칙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성주군의회 규칙 제　　호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를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으로 한다.

제32조 단서 중 “그 취지를 설명할 때”를 “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본회의 질문 시 1문1답 방식으로 보충질문 할 때”로 한다.

제33조 단서 중 “신상발언”을 “신상발언과 보충질문”으로 하고, 제33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5조(안건심의) ①(생 략) ②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④(생 략)	제25조(안건심의)①(현행과 같음) ②----------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 ③~④(현행과 같음)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본회의 질문시 1문1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생 략)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신상발언,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현행과 같음)